

#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1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53,748,986	19,612,470
일반회계	528,266,392	15,847,992
특별회계	125,482,594	3,764,478
공기업특별회계	31,587,755	947,63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104,258	213,12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483,497	734,505
기타특별회계	93,894,839	2,816,84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146,740	754,402
주택사업특별회계	2,796,868	83,906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250,310	97,50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40,000	31,2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536,000	46,08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967,246	179,01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364,139	160,924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8,793,536	1,463,80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성"과 같다.(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4,231,15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5,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